

平昌郡議會本會議會議錄

第20回平昌郡議會

第 1 號

平昌郡議會事務課

1993年 11月 25日(木) 午後 2時 07分

議事日程 (第1次 本會議)

1. 第20回平昌郡議會(定期會)會期決定의件
2. 第20回平昌郡議會(定期會)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3. 1993年度行政事務監查時期및期間決定의件
4. 行政事務監查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5. 行政事務監查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6. 郡守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附議된案件

1. 報告事項 _____ 2 面
2. 第20回平昌郡議會(定期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_____ 2 面
3. 第20回平昌郡議會(定期會)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_____ 2 面
4. 1993年度行政事務監查時期및期間決定의件(議長提議) _____ 3 面
5. 行政事務監查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金樂雲議員外6人發議) _____ 3 面
6. 行政事務監查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_____ 4 面
7. 郡守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郭文春議員外6人發議) _____ 4 面

(14시07분 개의)

○ [REDACTED] 좌석을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제19회 임시회 이후 금년도 정기회 준비와 지역단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의회개원후 세번째 맞는 정기회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정에 관한질문, 내년도 평창군의 예산안심사 그리고 지난해 결산등 주요한 안건의 심의 의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회기인만치 의원 여러분께선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의원 상호간의 의사를 존중한 가운데 모든 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폐회기간중의 보고사항을 사무과장으로 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1. 報告事項

(14시10분)

○ **사무과장 권혁승** 사무과장 권혁승입니다.

폐회기간중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끝에 실음)

○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 第20回 平昌郡議會(定期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14시12분)

○ **議長 韓榮**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제20회 평창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第20回平昌郡議會(定期會)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14시13분)

○ **議長 韓榮** 다음은 의사일정제2항 제20회 평창군의회정기회 회의록서명 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이치옥의원과 광문춘의원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지명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1993年度行政事務監査時期및期間決定의件 (議長提議)

(14시14분)

○ **議長 韓榮**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간 사전 합의된 대로,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金樂雲議員外6人發議)

(14시14분)

○ **議長 金樂雲**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 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낙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 金樂雲** 김낙운 의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결의안은 평창군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의 효율성 제고와 회의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문을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위원 7인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한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 김낙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김낙운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는 의원간 사전 합의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議長提議)

(14시15분)

○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은 사전 동료의원간 합의된 대로, 이치욱의원, 이상훈의원, 박용태의원, 주태원의원, 김낙운의원, 박문춘의원, 김종영의원 이상 7인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7. 郡守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郭文春議員外 6人發議)

(14시16분)

○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수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 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문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 박문춘 의원입니다.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집행부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군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 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등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출석요구일자는 11월 27일과 11월 28일 2일간이 되겠으며, 출석대상자로는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사회전

홍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민방위과장, 보건사업과장, 농촌지도소의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상 18명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6인이 발의한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韓榮一~~ 광문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광문춘 의원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준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는 의원간 사전 합의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議長韓榮一~~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議長韓榮一~~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안건 모두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제20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14시19분 산회)

○ 出席議員

- 議長 韓榮一
- 副議長 金鍾永
- 議員 李致玉
- 議員 李相薰
- 議員 朴容泰
- 議員 朱泰元
- 議員 金樂雲
- 議員 郭文春

○ 議會事務課

- 事務課長 權赫昇
- 議事係長 咸京鎬

[議 席]

○ 議席表 (5 面에 실음)

平昌郡議會 會議規則 第46條의 規定에
依據 署名捺印함.

1993年 11 月 26日

議長 韓 榮 

議員 李 敦 

議員 郭 文 

事務課長 權 赫 

[報 告 事 項]

- 제20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소집
(지방자치법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
- 의안이송
 1.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1993년11월9일 평창군이송. 11월16일 공포통지)
 2. 평창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 (1993년11월9일 평창군이송. 11월16일 공포통지)
 3. 평창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993년11월9일 평창군이송. 11월16일 공포통지)
- 의안제출
 1. 평창군새마을소득금고관리조례개정조례안(1993년11월24일 평창군수제출)
 2. 평창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폐지조례안 (1993년11월24일 평창군수제출)
 3.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1993년11월24일 평창군수제출)
- 의원발의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993년11월22일 이치욱의원의6인발의, 본회의 부의)

<p>2. 군수동관계공무원출석요구 (1993년11월22일 이치욱위원의6인발의, 본회의 부의)</p> <p>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993년11월22일 김낙운위원의6인발의, 본회의 부의)</p> <p>○ 진정서접수</p> <p>1. 계촌저수지 상수도보호구역 지정반대 (1993년11월4일 계촌5리 박천석외16인 제출 1993년11월22일 회신)</p> <p>○ 대정부건의문송부</p> <p>1. 농업재해복구비현실화에관한건의안 (1993년11월10일 경제기획원장관의2개 기관)</p> <p>○ 위원추천의뢰</p> <p>1. 평창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구성에 따른 추천의뢰 (1993년11월24일 평창군수제출)</p>	
---	--